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·시설
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
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김민석 (국토교통부 등 5개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·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·지정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인력·시설 등 기준을 완화하고,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·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의 개정)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3 제1호의 지정요건란 가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4명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의 지정요건란 나목 중 “면적 60㎡”를 “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강의실 하나”로 한다.

제2조(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의 개정)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전단 중 “6명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가목의 자격기준란 2) 중 “3년 이상 근무한”을 “3년 이상 근무하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」의 개정)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호 중 “7급 이상 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인삼산업법 시행령」의 개정)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호 중 “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”을 “졸업한 사람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나목1) 및 2) 외의 부분 중 “검사장에는 66㎡ 이상의 전용 검사장을 설치”를 “검사장은 검사에 필요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.

제6조(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2호의 지정요건란 가목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란 나목을 삭제한다.

제7조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호가목의 자격기준 등란 4) 중 “10년”을 “8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의 자격기준 등란 4) 중 “7년”을 “6년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의 자격기준 등란 4) 중 “5년”을 “4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) ① · ② (생략)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”란 6 명을 말한다. 이 경우 제2항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. ④ ~ ⑥ (생략)	제18조(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5 명-----. ----- ---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간부직원의 자격) 법 제59조제2항 본문(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	제17조(간부직원의 자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<u>7급 이상 공무원</u> 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	3. ----- <u>공무원</u>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
인삼산업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검사원의 자격)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	제5조의2(검사원의 자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·화학·농학·식품공학·영양학 또는 약학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	1. ----- ----- ----- -- 졸업한 사람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1의2. ~ 4. (생략)	1의2. ~ 4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
연 락 처	(044) 201 - 3228
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
연 락 처	(044) 200 - 5164
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2) 2100 - 6088
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1 - 1365
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
연 락 처	(044) 204 - 7360